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2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2

I. 개요

1. 임종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3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종특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26.
- (3) 회 부 일 : 2026. 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²⁾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³⁾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참고]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1. ~ 6의3. (생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u>
<u><신설></u>	<u>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u>
<u><신설></u>	<u>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u>
<u>7.</u> (생략)	<u>10.</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4)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⁵⁾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⁶⁾)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의 상세내역은 [표 1]과 같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5)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 6)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표 1] AED 의무구비시설의 유형 및 기준

유형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철도차량 객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 대합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시·도 청사(17개 시·도 청사)

자료: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 개정안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를 AED 의무구비시설에 새롭게 포함하여 해당 시설에서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 시설이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및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AED 의무구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고연령층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표 2])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 연령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2024년)

(단위: 건, %)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건수 (100.0)	299 (0.9)	377 (1.1)	814 (2.5)	1,149 (3.5)	2,225 (6.7)	4,296 (13.0)	6,377 (19.3)	6,988 (21.2)	10,493 (31.8)

주: 연령미상(16건) 제외 통계임.

자료: 질병관리청·소방청,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2025. 12.

다만,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유형 및 규모의 다양성, AED의 실질적인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AED의 의무구비시설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⁷⁾.

7)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은 유형 및 규모가 다양하고 시설의 수가 많으며(노인복지시설 96,43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984개소), 경로당과 같이 통상 상주직원 없이 자체 운영하거나 노인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이나 장애인 생활활동지원센터와 같이 재가서비스 또는 이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도 있음.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8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19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등) 70,93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등) 18,745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15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통계, 2024년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

- 거주시설 1,52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609개소, 직업재활시설 815개소, 의료재활시설 19개소, 생산품판매시설 17개소

(자료: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 2024년 기준)

- 둘째, 대규모점포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 22. 일부개정) 부칙 제3항⁹⁾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일부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시장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 셋째,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의3에 규정된 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AED 의무구비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을 활용하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음.

□ 한편, AED 의무구비시설을 확대하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3]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동 개정안 포함)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2203226 (박주민의원)	'24.8.27.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204056 (인요한의의원)	'24.9.19.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2,632개소(폐업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규모점포' 통계, 2026. 2. 조회 기준)

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 22.>

③ (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10) 이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안 부칙에서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206389 (임호선의의원)	'24.12.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구비
2208726 (이광희의원)	'25.3.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역축제*
2210091 (김민석의원)	'25.4.24.	- 철도역사 대합실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포함)
2211159 (김재원의의원)	'25.6.30.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
2214619 (문진석의원)	'25.11.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215943 (김태호의원)	'26.1.9.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216323 (임종득의원) ※동 개정안	'26.1.26.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주: 해당 의무구비시설의 규모 등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에
서 규정하는 경우 “*” 표기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는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도, 접근성, 관리 가능성 및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시설은 서비스대상 상주여부 및 관리책임자 지정 곤란 등 점검·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고려 필요
 - 대규모점포에는 전통시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옥외설치 가능성에 대한 추가 배려가 필요
-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및 대규모점포를 구비의무대상시설로 지정할 경우 월 1회 통보 의무가 발생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까지 연계됨¹¹⁾.
 - 이는 관리역량이 제한된 시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행정부담과 현장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에 반대함.
- (대한심폐소생협회) 입법취지에 동의함. 다만 AED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대통령령으로 설치 대상의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심장정지 발생 가능성과 AED설치의 비용·효과를 고려할 필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509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